

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·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 
(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,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·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<br>법조문     | 1차       |           | 2차       |           | 3차 이상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처분<br>기준 | 과징금<br>금액 | 처분<br>기준 | 과징금<br>금액 | 처분<br>기준 | 과징금<br>금액 |
|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1항제1호 | 등록<br>취소 | 해당<br>없음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나.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1항제2호 | 등록<br>취소 | 해당<br>없음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다.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(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) | 법 제31조 제1항제3호 | 등록<br>취소 | 해당<br>없음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라.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       | 등록       | 해당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법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(법인이 법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제4호        |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마.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1항제5호 | 등록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바.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1항제6호 | 영업 정지 12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억2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사.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1항제7호 | 영업 정지 3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정지 6개월               | 6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정지 12개월 | 1억2천만원          |
| 아. 고의 또는 과실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<br>1)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<br>2)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<br>3)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<br>4) 타당성 조사 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<br>5)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<br>6)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| 법 제31조 제1항제8호 | 영업 정지 12개월<br>영업 정지 6개월<br>영업 정지 3개월<br>영업 정지 12개월<br>영업 정지 6개월<br>영업 정지 3개월 | 해당 없음<br>해당 없음<br>해당 없음<br>1억2천만원<br>6천만원<br>3천만원 | 영업 정지 12개월<br>영업 정지 6개월 | 해당 없음<br>해당 없음<br>1억2천만원<br>6천만원 | 영업 정지 12개월 | 해당 없음<br>1억2천만원 |
| 자.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<br>1)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<br>2)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1항제9호 | 등록 취소<br>영업 정지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<br>6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정지 6개월               | 6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차.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1호 | 경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정지 1개월               | 1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정지 1개월  | 1천만원            |
| 카.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       | 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                     | 6천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업         | 6천만원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항제2호           | 정지 3개월    | 원     | 정지 6개월    | 원     | 정지 6개월    | 원     |
| 타.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3호    | 경고        | 해당 없음 | 영업 정지 1개월 | 1천만 원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
| 파.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4호    | 경고        | 해당 없음 | 영업 정지 1개월 | 1천만 원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
| 하.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1)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·검사·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가목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 영업 정지 3개월 | 3천만 원 | 영업 정지 3개월 | 3천만 원 |
| 2)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·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나목 | 경고        | 해당 없음 | 영업 정지 1개월 | 1천만 원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
| 3)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다목 | 경고        | 해당 없음 | 영업 정지 1개월 | 1천만 원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
| 4)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·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[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(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)을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]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라목 | 경고        | 해당 없음 | 영업 정지 1개월 | 1천만 원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
| 5)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(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마목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          |       |
| 6)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바목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          |       |
| 7)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5호 사목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          |       |
| 거.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6호    | 영업 정지 1개월 | 1천만 원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 영업 정지 2개월 | 2천만 원 |
| 너.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|
| 1)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·부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가목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영업 정지 6개월 | 6천만 원 |           |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2)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<br>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나목 | 영업<br>정지<br>6개월 | 6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6개월 | 6천만<br>원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3)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<br>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<br>거부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다목 | 영업<br>정지<br>1개월 | 1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2개월 | 2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3개월 | 3천만<br>원 |
| 4)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<br>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<br>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<br>실시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라목 | 영업<br>정지<br>6개월 | 6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6개월 | 6천만<br>원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5)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<br>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<br>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<br>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<br>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마목 | 영업<br>정지<br>2개월 | 2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3개월 | 3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6개월 | 6천만<br>원 |
| 6) 법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<br>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<br>을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<br>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<br>않은 경우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바목 | 경고              | 해당<br>없음 | 경고              | 해당<br>없음 | 영업<br>정지<br>1개월 | 1천만<br>원 |
| 7)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<br>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<br>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31조 제2항제7호 사목 | 영업<br>정지<br>1개월 | 1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2개월 | 2천만<br>원 | 영업<br>정지<br>2개월 | 2천만<br>원 |

비고: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세부분야 중 중합 분야 또는 설계·사업관리의 일  
반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이 표 제2호바목 또는 아목부터 너목까  
지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, 건설기술용역 계약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 
때 그 위반행위가 설계등용역업무, 건설사업관리업무 또는 품질검사업무 중 특정 업무  
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.